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

2013. 1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안내 목적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정보처리위탁규정」) 중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용원칙을 안내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성 및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
하기 위함
- 한편, 본 안내서는 「정보처리위탁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본 안내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은
이와 달리 판단(위탁을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음

목 차

I. “정보처리 업무” 의 의미	1
II. 국외위탁 제한설비의 범위(원장 등)	2
III. 정보처리 재위탁 허용 범위	7
IV. 국외위탁 승인 절차	9
참고 :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승인 신청 서식	13

제2조(정의) 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행하는,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석 필요성

- “정보처리 업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정보처리위탁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증진

2. “정보처리 업무” 의 의미

-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생성, 가공, 출력, 제공 등을 전산설비에 의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통상적으로 금융회사의 IT전담부서 및 IT인력들이 처리하는 업무

* (예시) IT 기획 및 관리, IT 개발 및 유지보수, IT운영 및 보수정비, IT 정보보호업무 등

II

국외위탁 제한설비의 범위(원장 등)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의 국외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
2.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
4.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
5. 상기 각 호의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전산 보안설비

1. 해석 필요성

- 규정 제6조에 따라 국외위탁이 제한될 수 있는 설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증진

2. 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설비” 의 범위 및 사례

(1) “원장” 관련 설비의 개념

- “원장”이란 거래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장부
 - 원장 관련 설비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 업무적·법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설비를 의미
 - * 전자금융거래시 법적으로 지급 효력발생(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또는 출금 동의 철회 가능(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저장된 설비

(2) 금융거래 원장 설비의 범위

□ 금융거래 정보가 저장된 원장 설비

- 따라서 인사, 교육, 성과관리, 예산, 법률·세무관리, 경영지원·총무업무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업무와 관련된 원장 설비는 국외위탁 가능

(3)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국내 소재가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설비의 범위

□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금융거래 원장 설비의 국내 소재가 필요치 않은 경우 국외 위탁 가능

- 위탁회사가 “ (가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을 준수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판단

* 전산설비 위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위탁회사의 활동(①리스크 평가, ②수탁사 선정, ③계약 검토, ④수탁자 상시모니터링, ⑤업무연속성 확보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지침

3. 동항 제2호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 처리 설비” 의 사례

- (은행) 자동화기기/영업점시스템, 콜센터 및 통합인증시스템 등
(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웹트레이딩 시스템(WTS) 등

(보험) 보험처리종합시스템, 보험영업정보시스템, 방카슈랑스 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

(카드) 신용카드 발급 및 승인시스템 등

(전자금융) 거래승인·승인증계·발급승인 시스템 등

※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제외

4. 동항 제3호의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 의 사례

□ 한은금융망(BOK-Wire+), 어음교환시스템, 지로공동망, 은행 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 시스템,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직접 연결된 전산설비

* 현금인출기(CD)공동망 : 소액 인출·입금·송금

타행환공동망 :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

지방은행공동망 :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결제

전자화폐(K-CASH)공동망 :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

5. 동항 제4호의 “국외 위탁시 관련 법령 준수 불가 전산 설비” 의 사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국외위탁시 동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재해복구센터가 국외소재시 법상 재해복구 목표시간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등

* 전자금융거래법 §21 및 감독규정§23⑧에 복구목표시간 명시

6. 동항 제5호의 “상기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IT 보안설비” 의 사례

* 금융위원회가 국외위탁을 제한하는 전산설비

- 네트워크 장비 : 허브,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등
- 보안장비 : 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 탐지시스템(IDS) 등

Ⅲ

정보처리 재위탁 허용 범위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④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감독권한 행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본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1. 해석 필요성

-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2. 재위탁 가능 범위

- ① (재위탁 가능 업무) 정보처리가 수행되는 전산장비·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허용하되,

* 전산장비 OS·시스템SW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시스템 정기점검, 프로그램 변경·개발, 홈페이지(홍보목적용) 운영·유지보수, 보안장비 운영 및 패턴 업데이트,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지원 등

- 위탁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변경은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 (재위탁 가능 환경) 위탁업무와 관련된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원수탁업자의 데이터센터 내에 존재 하여야 함(재수탁업체의 사무실 등 제3자의 장소로 이전되지 않아야 함)

* 재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정보가 비식별화 처리되고, 재수탁자가 다른 보유 정보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이용자를 식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외

○ 위탁업무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외의 정보는 제3자의 장소로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탁업체가 그 정보를 임의로 조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원수탁업자의 임직원이 재수탁업체를 관리·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③ (재위탁받는 수탁자 제한) 재수탁업체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가부를 개별심사

○ 재수탁회사는 다양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재수탁회사의 전문성과 기술력·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전문 IT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

* 국내 IT전문회사 및 글로벌 IT전문회사 등에 위탁이 가능

IV

국외위탁 승인 절차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①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석 필요성

- 「정보처리위탁규정」상 전산설비 국외위탁은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 전산설비 위탁 승인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여 안내할 필요

2. 전산설비 위탁 승인 절차

- ① 사전 금융위 신청 : 전산설비 국외위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사전에 금융위에 전산설비 위탁 승인 신청
 - * 승인 신청서 및 요건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② 금감원 요건 검토 후 금융위 상정 : 금감원은 승인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위 각 업권부서에 송부하고 금융위 각 업권부서에서 금융위에 승인안건 상정
 - ③ 금융위 의결 후 금융회사에 결과 통보
- ※ 전산설비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설비 위탁 승인 신청시 그러한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 * 재위탁 가능범위는 “정보처리 재위탁 허용범위”와 동일

3. 전산설비 위탁 승인신청시 제출받을 서류

① 승인신청서(참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4조(보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위수탁 보고” 양식을 준용
 - 동 서식에서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등)”을 같이 제출

② 규정 제7조의 정보처리 위탁 사전보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 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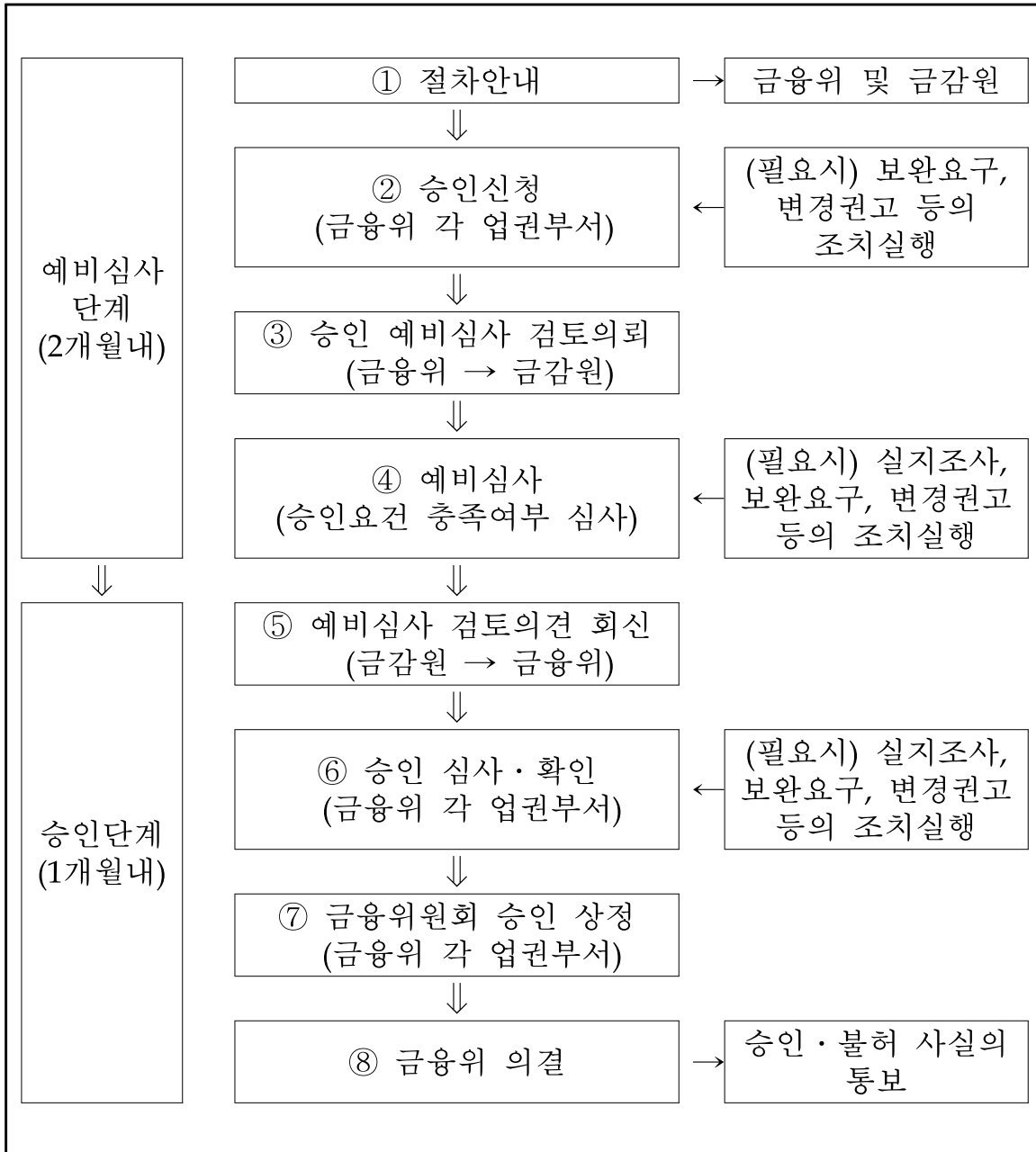
③ 규정 제6조에 따라 전산설비 국외위탁시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6조제2항 각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제3항 각호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설비 위탁 신청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2.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구비
3.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절차 구비 여부
4.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통과 여부

4. 전산설비 국외위탁 승인 흐름도



※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승인 신청 서식
-----------	----------------------------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해당 국장
 제 목 전산설비 국외위탁의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의 국외위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위탁계약건명	
계약상대방 (재위탁 예정시 재위탁 계약상대방 병기)	
계약기간	
계약내용	

※ 첨부서류

1. 계약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 계약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1부
2. 위탁계약서(안) 사본 1부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1부
4.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1부
5.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6.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1부
7.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1부
11.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1부
12. 이용자 피해구제절차 1부
1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보안성 심의 결과 1부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